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은 14인 이상으로 한다.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인터넷, 홍보물)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인지등급을 우선적으로 주야간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 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5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무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20%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때 발행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6.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20일(1일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7.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노인주·야간보호사업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제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대상자의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3.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의(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